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7. 10. 25

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10월 15일 이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7년 10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1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1차(97. 10. 23) 산업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가. 제안이유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대상과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일반장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각종 재해이재민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중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으로 하고, 특별장학생은 영세농업인의 자녀중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으로 함(안 제2조).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학업을 중단하였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 또는 경제력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6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태신)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일반 장학금과 특별 장학금으로 구분 지급하고, 지급대상과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7. 기타사항 : 없음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이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일반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각종 재해이재민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중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
2. 특별장학생은 영세농업인의 자녀중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중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안에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퇴학·정학·휴학 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2.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3. 경제력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 ②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시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하나, 연도중 지급 할 장학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u>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 영세농어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3.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p><u>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u>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장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각종 재해이재민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중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 2. 특별장학생은 영세농업인의 자녀중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고등학생
<p><u>제3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u>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p>	<p><삭제></p>
<p><u>제4조(장학금의 인원 및 지급액)</u>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p>	<p><u>제4조(장학금의 인원 및 지급액)</u>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안에서</p>
<p><u>제6조(지급정지)</u> ①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실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정학·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타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p>②장학금 지급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 수는 새로이 선발한다.</p>	<p><u>제6조(지급정지)</u> ①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학·정학·휴학 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2. 타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3.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p>②제1항각호의 사유가 발생시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하나, 연도 중 지급할 장학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한다.</p>